

[별첨 1]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서(서식)

[illegible]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, 추진주체(신청인)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번호부여 신청 구역계 등 공개시 추진주체(신청인)의 성명, 연락처 공개 및 기타 주택재개발사업 업무 추진 관련  
\* 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  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사업과,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)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  
\* 후보지 미선정될 경우 발표 후 6개월까지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  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,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
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 )

성 명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## 정비계획 입안요청(후보지 신청)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 연명부

### ■ 대상구역

- 대 표 위 치:
- 구 역 면 적:
- 토지등소유자수:

### ■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 동의자 명단

| 연번        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<br>(앞 6자리) | 소유물건지 주소 | 전화번호 | 지장날인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신청인<br>대표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1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2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3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4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5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6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7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8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9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10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
[별첨 4]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 검토서

□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(법령/조례) 검토결과 :

| 법령<br>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              | 기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 토 결 과 ( 예 시 )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             | 부적합   | 검토내용     |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|
| 도시<br>정비<br>법(령)<br>/<br>도시<br>정비<br>조례 | 필수<br>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<br>제8조제1항<br>시행령<br>제7조제1항<br>【별표1】 | 제2호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노후도<br>(동수)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후불량건축물 수<br>/ 전체건축물수<br>*재축지구 50% | ■               | □     | 77.5%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호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6조<br>제1항제2호 | 구역면적        | 10,000㎡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| □     | 24, 500㎡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<br>(나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 노후도<br>(연면적)     | 60%<br>이상   | 노후불량건축물<br>연면적합계<br>/ 전체건축물 연면적 합계<br>*재축지구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| 65%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<br>(가목)<br>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6조<br>제1항제2호<br>가목 | 과소필지             | 40% 이상      | 토지면적 90㎡<br>미만인 토지<br><br>(조례 제2조제9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              | 55%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<br>(사목)<br>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6조<br>제1항제2호<br>나목 | 주택<br>접도율        | 40% 이하      | (폭 6m이상 도로에 길이<br>4m 이상 접한 대지의<br>건축물의 총수) / (정비구역<br>내 건축물 총수)<br><br>(조례 제2조제10호) | 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              | 30%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<br>(나목)<br>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6조<br>제1항제2호<br>다목 | 호수밀도             | 60/ha<br>이상 |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<br>건축물 동수<br><br>(조례 제2조제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| 59/ha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호<br>(아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 반지하              | 50%<br>이상   | 지하층의 전부 또는<br>일부를 주거용도로<br>사용하는 건축물<br>수/해당지역 전체건축물수<br><br>-                       | 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              | 60%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법 적 기 준) 최 종 검 토 결 과<br>(적합 요건 = 필수요건 충족 +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■     | □        | 필수요건 충족<br>선택요건 2개<br>충족 |

※ 노후동수 75%이상인 경우 : 시 조례(선택요건) 갖춘 것으로 봄(선택요건 미충족시에도 입안가능)

● (법적요건) 세부 평가결과

1) 필수항목

① 노후도(동수)

- 기 준 : 노후·불량건축물 동수가 전체 건축물 동수의 60% 이상
- 노후도 현황

| 구 분 | 건축물 동수 |          | 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    | 총계     | 노후·불량건축물 | 양호 건축물 |          |
| 내 용 | ○○○    | ○○○      | ○○○    | 충족       |
| 비 율 | 100%   | ○○%      | ○○%    |          |

② 구역면적

- 기 준 : 10,000㎡ 이상
- ※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,000㎡ 이상

■ 면적현황

| 구 분 | 기준         | 면적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내 용 | 10,000㎡ 이상 | 00,000㎡ | 충족       |

## 2) 선택항목(1개 이상 충족)

### ③ 노후도(연면적)

■ 기 준 : 노후·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% 이상

■ 노후도 현황

| 구 분 | 건축물 연면적 (㎡) |          |   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| 총 계         | 노후·불량건축물 | 양호 건축물   |          |
| 내 용 | 143,395.5   | 91,662.6 | 51,732.9 | 미충족      |
| 비 율 | 100.0%      | 63.9%    | 36.1%    |          |

### ④ 과소필지

■ 기 준 :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율(90㎡ 미만) 40% 이상

■ 과소필지 현황

| 구 분 | 과소필지   |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| 전체 필지수 | 과소필지수 |          |
| 내 용 | 000    | 000   | 충족       |
| 비 율 | 100.0% | 00%   |          |

### ⑤ 접도율

■ 기 준 : 40% 이하

■ 접도율 현황

| 구 분 | 접도율    |       | 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    | 총 계    | 접도 건물 | 미접도 건물 |          |
| 내 용 | 000    | 000   | 000    | 충족       |
| 비 율 | 100.0% | 00%   | 00%    |          |

### ⑥ 호수밀도

■ 기 준 : 60호/ha 이상

■ 호수밀도 현황

| 구 분 | 건축물 동수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    | 구역면적(m <sup>2</sup> ) | 총 호수 | 1ha당 호수 |          |
| 내 용 | 〇〇〇                   | 〇〇〇  | 〇〇〇     | 미충족      |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## ⑦ 반지하

- 기 준 :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(50%)이상인 지역

### ■ 반지하 건축물 현황

| 구 분 | 반지하 건축물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충족 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| 해당지역<br>전체 건축물의 수 | 지하층 또는 일부를<br>주거용도로 사용하는<br>건축물의 수 |          |
| 내 용 | 〇〇〇               | 〇〇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충족      |
| 비 율 | 100%              | 0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생년월일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전화: )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신 청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지역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정 사업명<br>(구역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㎡)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토지등소유자                    | 총 소유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의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      | 동의율     | %            |  |
| 기 본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계획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구 ○○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적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검 토 결 과 |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역면적 등                    | 정비구역 면적·세대수 등의 적법성<br>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[별표1]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6조 등) |        |         |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 후 도                     | 노후도 비율의 적합성<br>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6조 등)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|  |
| <p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대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※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름</p> <p>성동구청장 귀하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|

[별지 제1호의3서식]

###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구역의 범위(구역계)

|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(구역명)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|  |

※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

[별지 제1호의4서식]

##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

정비사업 예정 사업명(구역명) :

| 연번 | 토지등소유자 |          |    |      | 권리내역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동의<br>여부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|
|    | 성명     | 생년<br>월일 | 주소 | 전화번호 | 소재지  | 토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건축물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지상권 |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  | 소유<br>면적<br>(㎡) | 편입<br>면적<br>(㎡) | 공유<br>여부<br>(지분) | 동<br>(호수) | 허가<br>유무 | 공유<br>여부<br>(지분) |     |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

※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름

(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/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)

[별지 제1호의5서식]

##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

[illegible]

[별지 제1호의6서식]

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기관부여<br>동의양식번호 | 00동 00번지 일대<br>제 00 호 |
| 번호부여일자           | 2004. . .             |
| 확인(인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1. 소유자 인적사항

|        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------|--|
| 성 명          |  | 생년월일 |  |
| 주민등록상<br>현주소 |  | 전화번호 |  |

※ 소유권 현황
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권리<br>내역 | 토 지 | 소 재 지 (공유여부) | 면 적 (㎡) |
|          |     | (계 필지)       | (계 )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 재 지 (허가유무) | 동 수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|

\*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

※ 주의사항

-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 
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
-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만 동의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
2. 동의내용 :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위 치<br>(요청 구역) | 00동 00번지 일대 | 구역면적 | (㎡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

상기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: 자필 서명 (지장날인)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(서명)하고,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인감, 기타 인장은 불인정)

성동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.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

\*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
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사업과,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)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
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
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 )

성 명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##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## ■ 소유권 현황

| 권리<br>내역 | 토 지 | 소 재 지 (공유여부) | 면 적(㎡)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(계      필지)  | (계      )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 재 지 (허가유무) | 동 수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   )     |           |

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」 관련 신청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\_\_\_\_\_을(를)  
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| 소유물건             | 연번 | 성명<br>(자필서명) | 주민등록번호<br>(앞 6자리) | 전화번호 | 지장날인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대표소유자<br>(선임수락자) | -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위임자<br>(동의자)     | 1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3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4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5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※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,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

##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(후보지 신청) 반대 동의서

### 1. 소유자 인적사항

|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|
| 성명           |  | 생년월일 | -     |
| 주민등록상<br>현주소 |  | 전화번호 | ( ) - |

### ※ 소유권 현황
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권리<br>내역 | 토지  | 소재지 (공유여부) | 면적(m <sup>2</sup> ) |
|          |     | (계필지)      | (계 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재지 (허가유무) | 동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\*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,  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

2. 반대 동의내용 :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 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에 반대합니다.

년 월 일

반대 동의자 : 자필 서명 [지장날인]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(서명)하고,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인감, 기타 인장은 불인정)

성동구청장 귀하

- 첨부 1. 신분증명서 사본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.  
 ※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 등  
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.  
 3.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). \*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

\*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
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사업과,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)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
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
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 )

성 명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##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## ■ 소유권 현황

| 권리<br>내역 | 토 지 | 소 재 지 (공유여부) | 면 적(m <sup>2</sup> 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(계 필지)       | (계 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 재 지 (허가유무) | 동 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」 관련 , \_\_\_\_\_을(를)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| 소유물건             | 연번 | 성명<br>(자필서명) | 주민등록번호<br>(앞 6자리) | 전화번호 | 지장날인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대표소유자<br>(선임수락자) | -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위임자<br>(동의자)     | 1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3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4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5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※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,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

##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(후보지 신청) 동의 철회서

### 1. 동의 철회자(소유자) 인적사항

|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|
| 성명           |  | 생년월일 | -        |
| 주민등록상<br>현주소 |  | 전화번호 | (    ) - |

### ※ 소유권 현황
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권리<br>내역 | 토지  | 소재지 (공유여부) | 면적(m <sup>2</sup> ) |
|          |     | (계필지)      | (계    )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 )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 )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재지 (허가유무) | 동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 )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   )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\*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,  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

2. 동의 철회 내용 :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 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를 철회합니다.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동의 철회자 :       자필 서명       [지장날인]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(서명)하고,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인감, 기타 인장은 불인정)

성동구청장 귀하

- 첨부 1. 신분증명서 사본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.  
       ※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 등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.
3.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). \*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

\* 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
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사업과,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)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
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
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 )

성 명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##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## ■ 소유권 현황

| 관리<br>내역 | 토 지 | 소 재 지 (공유여부) | 면 적(m <sup>2</sup> 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(계 필지)       | (계 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 재 지 (허가유무) | 동 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」 관련, \_\_\_\_\_을(를)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| 소유물건             | 연번 | 성명<br>(자필서명) | 주민등록번호<br>(앞 6자리) | 전화번호 | 지장날인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대표소유자<br>(선임수락자) | -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위임자<br>(동의자)     | 1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3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4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5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※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,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

- 성동구 00동 00번지 일대 -

##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00동 00-00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[(붙임2~4) 입안요청(찬성) 동의서, 반대 동의서, 철회 동의서]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한 찬성 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주민신청(주민→區)전까지 제출, 반대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(區 →市)전까지 제출된 반대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구 역 계 : 00동 00-00 일대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구역계 첨부

※ 토지등소유자 수: 〇〇〇명(번호부여 발급 요청일 기준)

## 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
※ (주의사항)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첨)에 성명 및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며, 미동의시 성명은 '성'만 공개(유OO)하고 연락처는 사무실 번호만 공개

○ 성 명 : 000

○ 연락처 : 010-0000-0000 (사무실 : 02-000-0000)

## 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| 00동 00번지 일대<br>제 0 호 |
| 번호부여일자        | 2024. 00. 00         |
| 확인(인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공개 장소

○ 성동구 홈페이지 > 행정자료실

○ 번호부여 요청 구역의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

## 5. 기타 안내사항

○ '입안요청 동의서'는 추진주체에 발급된 동의서만 사용 가능하며, 입안요청 (주민→區)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됩니다.

○ 동의율 산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는 입안요청(주민→區)까지는 '번호부여 발급 요청 접수일'을 기준으로, 입안요청 이후에는 '입안요청 접수일'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○ 필지 또는 건축물, 지상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되, 공유자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로 처리 가능합니다.

※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/4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

- 입안요청 전에 반대 동의율이 공모 제외요건인 25%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기 발급된 동의서는 무효로 하고, 이를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‘입안요청서’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‘성동구 홈페이지 > 행정자료실’에 공지 예정이오며,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(공휴일인 경우 첫 근무일) 까지 제출된 반대동의서만 유효합니다.
-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철회하거나, 후보지 추천 제외, 후보지 추천결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다시금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의 90% 이상이 종전 구역과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,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입안제안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이 제한됩니다.
-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 됩니다.

| 구 분       | 권리산정기준일 지정<br>(지분쪼개기 방지) |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<br>(갭투자 등 방지) | 건축허가 제한<br>(분양권없는 건축행위,<br>지분쪼개기 방지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후보지 선정구역  | 후보지 추천일 기준              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              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후보지 미선정구역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되고,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1년 이내 정비계획 결정신청이 안될 경우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.  
※ 다만, 서울시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, 각1년 1회 연장 가능
- 정비계획(안)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5%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 1/20이상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, 토지등소유자의 20%이상 반대 시에는 입안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.
-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‘성동구 홈페이지 > 행정자료실’에서 ‘신속 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(후보지 신청) 안내문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안내없이 해당

내용으로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.
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(02-2286-6563~656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